

그룹홈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가전제품 지원사업
“집에서 무해?!” 선정안내문

1.

사업개요

지원 목적	그룹홈 거주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인(인덕션, 보일러)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친환경 가전제품 및 지원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아동보호 체계 강화
지원 대상	그룹홈 45개소
지원 금액	1개소당 최대 60만원 지원
지원 분야	그룹홈 내 친환경 가전 제품교체 비용 최대 60만원 지원 (인덕션 및 콘덴싱 보일러)
선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홈내 친환경 가전 제품교체 중 인덕션 및 보일러 우선 (후원처 지정사항) - 최근 3년 유사사업(가전 미지원 기관 우선) (협의회 : 환경개선사업-구해줘가전, 그린하우스 등) - 친환경 가전제품 중 파손, 10년 이상 노후 물품 미설치 기관 우선 - 신청서를 통한 지원의 필요성, 진실성, 성실성 등 고려 - 지역적 안배 등 고려 - 신청서내 서류 미비 그룹홈 제외
제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 지출 영수증(원본) 및 결과보고서 - 제출기간 : 2023년 6월 30일 (금)까지 - 제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출 영수증(원본)-사무국 우편제출 (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18길 5, 6층,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② 결과보고서-협의회 홈페이지 제출(2023년 집에서무해 결과보고서 제출 등록)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계좌이체 시 세금계산서 필수 발행 (그룹홈 고유번호로 발행 / 개인번호발급 절대 불가) ② 계좌이체는 가능한 사용을 지양함 ③ 현금인출 결제 절대 불가, 현금지출 시 지원금 전액 회수 ④ 지원금이 입금된 통장&카드만 사용 가능 ※ 개인 카드 사용 불가 ⑤ 지원금 입금 이전의 지출은 지원 불가 ⑥ 견적금액이 변경될 시 잔액은 반납 처리하며, 초과 금액은 그룹홈 자부담처리 ⑦ 사업비 잔액 반납은 서류 제출 완료 후 반납안내 진행 ⑧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결과보고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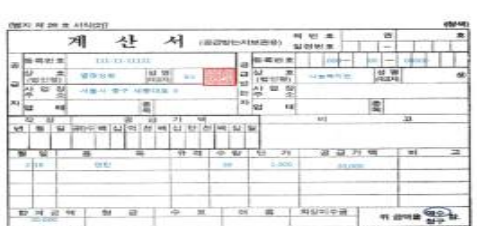


선정명단 (기관명 ㄱ-ㄷ 순)

연번	지역	기관명	연번	지역	기관명
1	울산	그루터기	24	강원	요셉의집그룹홈
2	충남	기쁨드림그룹홈	25	충남	우리집그룹홈 (충남)
3	광주	길상원그룹홈	26	강원	은총의집
4	전북	꽃봉지그룹홈	27	경기	이모네
5	전남	꿈꾸는나무	28	경기	임마누엘우리집
6	전북	꿈꾸는집그룹홈	29	경남	진주 한울타리
7	경기	꿈이흐르는샘	30	서울	킹스키즈그룹홈
8	경기	나섬의집	31	경남	태양의집
9	광주	늘빛그룹홈	32	부산	파더스하우스
10	부산	단비그룹홈	33	부산	파랑새그룹홈(부산)
11	전북	둘하나그룹홈	34	전북	파랑새그룹홈(전북)
12	부산	등지공동생활가정	35	전북	포도원
13	경남	로템나무숲 그룹홈	36	전북	하늘사람들
14	광주	로템의집	37	충북	한가족그룹홈
15	충남	무지개공동생활가정	38	광주	한울그룹홈
16	경기	보람동지	39	전북	해나래
17	전북	사랑애샘터	40	대구	해맑은아이들의집
18	전남	새꿈동지그룹홈	41	경기	해피하우스푸른초장
19	경북	솔빛그룹홈	42	경기	햇살고운집
20	전북	아이들세상	43	경남	호산나그룹홈
21	서울	예담의 집	44	경기	화성희망
22	경기	예담사랑의집	45	충남	희망터전
23	충북	예찬하우스	총 45개소 선정		

적격증빙 수취 우선순위

증빙 원칙 :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어야 함.

적격증빙자료	내용
① 배분사업전용체크카드 매출전표	카드전표 증빙으로 첨부, 배분금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만을 의미하므로 개인 혹은 법인카드는 사용 불가
② (전자)세금계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기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세금계산서 오른쪽 맨 아래에 "영수함"이라고 쓰여 있으면 그 자체로 적격 증빙이지만, "청구함"이라고 쓰여 있다면 이체내역이 나와 있는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이체확인증이 있어야 적격증빙이 됨.
③ 계산서 * 면세사업자, 일부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또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한 간이과세사업자에 한하여 계산서 수취 * 위 기준 외 간이과세자에게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
④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 시 번호는 개인의 번호가 아닌 기관이나 단체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로 발급. 또한 '현금지급사유서'를 작성하고 첨부
⑤ 간이영수증	3만 원 이하 건에 한해 인정 가능하나 사용 지양 * 공급자매도인의 상호, 주소, 영수증 일련번호 등 해당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⑥ ①~⑤의 방법으로 증빙이 불가한 경우	배분금 지출 시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증빙 첨부가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상대방 계좌로 송금 후 지급증(모금회 양식)을 수취하고, 현금지급사유서와 이체확인증 첨부

<p>① 배분사업전용체크카드 매출전표</p> 	<p>② (전자)세금계산서</p>  <p>※전자세금계산서 수취를 원칙으로 함</p>
<p>③ (전자)계산서(면세사업자, 일부 간이과세자)</p>  <p>※ 공급가액 오른쪽에 세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p>	<p>④ 기관/단체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p>  <p>← 사업자번호로 발급 시 현금지출증빙이러기 가능함 ← 금액에 관계없이 발행됨 ← 현금영수증상당액의 결 회번호인 줄줄이까지 수소가 기재되어 있음</p>
<p>⑤ 간이영수증 (3만 원 이하 건에 한해 인정 가능하나 사용을 지양함)</p> 	

※ 면세사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영위하는 사업